

공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6-72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6-14
- 점용위치 :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172-1번지선
- 점용목적 : 육상 양식어업 해수 인·배수
- 허가기간 : 2016. 5.27. ~ 2021. 5.26
- 허가면적 : 44㎡
- 허가 연월일 : 2016. 6. 8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길 27-1
- 피허가자 성명 : 김건우

2016. 6.

포 항 시 장